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466

발의연월일: 2021. 9. 7.

발 의 자 : 윤건영 · 김승원 · 김영배

김태년 · 박홍근 · 신영대

신정훈 · 오기형 · 오영환

이성만 · 이용선 · 전재수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여권법」에 따르면, 여권 발급의 거부·제한의 구체적 사유 및 기한에 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여러 문제가 발 생하고 있음.

여권 발급은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제14 조와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어느 누구도 자국에 돌아올 권리를 자 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않는다'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과도 연관되어 있음.

이처럼 여권 발급을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에 해당함에도, 여권의 발급을 거부하고 제한하는 사유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은 행정권의 남용의 소지가 있음.

실제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재외국민에 대한 여권발급 거부조치가 자국민의 국내 입국을 불허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

을 개선하라는 권고를 한 바 있음.

이에 여권 발급의 거부·제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여권 발급의 거부 및 제한 행위를 할 때는 행정부의 자체 판단에 맡겨둘 것이아니라, 별도의 절차를 통해 객관적인 심의를 필수적으로 거칠 필요가 있음.

이에 여권 발급의 거부·제한 사유를 여권법에 명시하고, 외교부장 관이 여권 발급의 거부 및 제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여권정책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여 여권 발급 과정 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2조 및 제18조 등).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거부·제한"을 "거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4호에"를 "제1항 각 호에"로,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고 제18조에"를 "제18조에"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다만,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야 한다.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2조의2(여권의 발급 등의 제한) ① 외교부장관은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죄를 범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사람은 2년의 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 ② 외교부장관은 외국에서 살인, 강도, 납치, 인신매매, 성범죄, 마약류범죄, 밀항·밀입국이나 그 밖의 중대한 위법행위(유죄판결이 확정된 행위로 한정한다)를 하여 외국 정부로부터 강제퇴거 조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항의나 시정·배상·사죄 요구 조치 또는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민에 대하여 권익제한이나 의무부과를 신설·강

화하는 조치를 받고 그 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 1. 해당 위법행위의 국내법상 법정형(法定刑)이 단기 1년 이상인 징역형 또는 금고형 이상에 해당하거나 그 보다 중한 사람: 3년
- 2. 해당 위법행위의 국내법상 법정형이 단기 1년 미만이면서 장기 3년 이상인 징역형 또는 금고형에 해당하는 사람: 2년
- 3. 해당 위법행위의 국내법상 법정형이 단기 1년 미만이면서 장기 3 년 미만인 징역형 또는 금고형에 해당하는 사람: 1년
- ③ 외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려고 할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여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위법행위의 내용 및 횟수, 국위(國威) 손상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12조의3(긴급한 인도적 사유에 따른 예외적 여권 발급) 외교부장관은 제12조나 제12조의2에 따라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이 거부되거나 제한된 사람에 대하여 긴급한 인도적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에 따른 여행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는 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제12조제1항제4호에"를 "제12조 및 제12조의2 에"로, "거부에"를 "거부 및 제한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12조(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 · 제12조(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 제한)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② -----제1항 각 호 해당하는 사람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법 -----레18 무부장관과 협의하고 제18조에 따른 여권정책심의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야 한다. <단서 신 ----. 다만,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 설> 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 다. <삭 제> ③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이 있는 날 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 간 동안 여권의 발급 또는 재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죄 를 범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사 람

- 2. 외국에서 위법한 행위 등으 로 국위(國威)를 크게 손상시 키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 그 사실 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 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람
- ④ 외교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 | <삭 제> 3항에 따라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이 거부되거나 제한된 사람에 대하여 긴급한 인도적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 유에 따른 여행목적에만 사용 할 수 있는 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신 설>

- 제12조의2(여권의 발급 등의 제 한) ① 외교부장관은 제12조제 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죄를 범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 거나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 <u>니하기로 확정된 사</u>람은 2년의 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 ② 외교부장관은 외국에서 살 인, 강도, 납치, 인신매매, 성범 죄, 마약류범죄, 밀항 · 밀입국

이나 그 밖의 중대한 위법행위 (유죄판결이 확정된 행위로 한 정한다)를 하여 외국 정부로부터 강제퇴거 조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항의나 시정・배상・사죄 요구 조치 또는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민에 대하여권의제한이나 의무부과를 신설・강화하는 조치를 받고 그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람에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제한할 수 있다.

- 1. 해당 위법행위의 국내법상
법정형(法定刑)이 단기 1년
이상인 징역형 또는 금고형
이상에 해당하거나 그 보다
중한 사람: 3년
- 2. 해당 위법행위의 국내법상 법정형이 단기 1년 미만이면 서 장기 3년 이상인 징역형 또는 금고형에 해당하는 사람: 2년
- 3. 해당 위법행위의 국내법상

 법정형이 단기 1년 미만이면

서 장기 3년 미만인 징역형또는 금고형에 해당하는 사람: 1년

③ 외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려고 할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여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위법행위의 내용 및 횟수, 국위(國威) 손상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 및 제2항에따른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의3(긴급한 인도적 사유에 따른 예외적 여권 발급) 외교부장관은 제12조나 제12조의2에 따라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이 거부되거나 제한된 사람에 대하여 긴급한 인도적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에 따른 여행목적에만 사용할

<신 설>

- 제18조(여권정책심의위원회) ① 저 여권업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 부에 여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2. (생략)
 - 3. <u>제12조제1항제4호에</u>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의 <u>거부에</u> 관한사항
 - 4. ~ 6. (생략)
 - ② ~ ⑤ (생 략)

수 있는 여권을 발급할 수 있
<u>다.</u>
제18조(여권정책심의위원회) ① -
,
1.•2. (현행과 같음)
3. <u>제12조 및 제12조의2에</u>
거부 및 제
한에
4. ~ 6.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